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39 발의연월일: 2024. 9. 2.

발 의 자:고동진·강승규·김종양

박준태 • 안상훈 • 박성훈

성일종 • 박덕흠 • 이달희

김상훈 · 김성원 · 한지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합성하여 만든 가짜 영상, 사진, 음성) 범죄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AI를 활용해 딥페이크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 소지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영국의경우 올해 4월 영상물이나 이미지를 유포할 의사가 없었다 해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제작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세계 각국이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을 위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국내법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서는 유포할 목적에 한정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유포했다는 사실 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 처벌할 수가 없고, 이를 소지, 구입, 시 청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는 상황임. 또한, 딥페이크가 성범죄 외 음성 등 AI보이스 피싱 사례에 악용될 수 있지만, 이를 예방 및 방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약한 실정임.

이에 ① 딥페이크 제작물을 유포 목적이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판매, 유포 및 이용 포함)하거나, ② 해당 제작물을 소지, 구입, 시청하여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③ 성범죄의 영상물뿐만 아니라 음성과 사진에 대한 딥페이크 규제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포괄적인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09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9조의2(인공지능 기술의 이용에 의한 명예훼손)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이하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제작, 판매, 유포, 이용하거나 해당 영상물등을 소지, 구입, 시청하여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연 앵 <u><신 설></u>	개 성 안 제309조의2(인공지능 기술의 이용에 의한 명예훼손)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촬영
	물, 영상물, 음성물(이하 "영상 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 판매, 유포, 이용하거나 해당
	영상물등을 소지, 구입, 시청하 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